「양평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시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진행하오며,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은 견본주택 관람을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www.riverpark-urban.co.kr)를 견본주택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며, 함께 운영되는 홈페이지(www.riverpark-urban.co.kr)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 측정 결과 37.3도가 넘을 경우
 • 소독발판,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확인 서류 접수와 관련해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하여 주택전시관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장 및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 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1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7)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양평군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양평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85㎡ 이하 주택은 2016.08.1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가점제 40%가 적용 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호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 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 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 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 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가 있을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 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 제8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제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홈페이지(www.riverpark-urban.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이후 임의 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5.28.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을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2020.07.27.(월)	2020.07.28(화)	2020.07.29.(수)	2020.08.04.(화)	2020.08.17.(월).~2020.08.19.(수)
방법/시간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10:00 ~ 16:00)
장 소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PC : 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PC : 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 19)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평군 건축과- 54554호(2020.07.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529번지외 22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최고 21층 5개동 총 420세대
[특별공급 181세대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42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42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84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대지면적 : 23,977.90㎡

■ 입주시기 : 2023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약식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총공급	공급 세대수	최하층

			(전용면적기준)		세대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공급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0000874	01	74.9939A	74A	74.9939	25.0167	100.0106	30.0157	130.0263	51.8164	77	8	7	17	1	33	44	2
		02	74.9004B	74B	74.9004	26.0098	100.9102	29.9783	130.8885	51.7518	20	1	3	6	-	10	10	1
		03	74.9819C	74C	74.9819	26.3568	101.3387	30.0109	131.3496	51.8081	39	5	5	9	2	21	18	2
		04	84.8635A	84A	84.8635	28.0699	112.9334	33.9660	146.8994	58.6358	209	13	15	37	5	70	139	2
		05	84.9692B	84B	84.9692	28.9259	113.8951	34.0083	147.9034	58.7088	37	6	6	7	3	22	15	2
		06	84.9743C	84C	84.9743	29.1338	114.1081	34.0103	148.1184	58.7123	38	9	6	8	2	25	13	2
	합 계										420	42	42	84	13	181	239	11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x 0.3025 또는 ㎡ ÷ 3.3058)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상기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체 대지면적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배분 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

(단위 : 원)

주택형	동(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5%)	2차(5%)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 주 지정기간
							계약시	계약체결후 1개월이내	2020.11.10	2021.03.10.	2021.08.10.	2022.01.11.	2022.05.10.	2022.09.14.	
74A	101동 (3,4,5)	2~4층	9	94,436,000	231,664,000	326,100,000	16,305,000	16,305,000	32,610,000	32,610,000	32,610,000	32,610,000	32,610,000	32,610,000	97,830,000
		5~21층	49	94,436,000	242,364,000	336,800,000	16,840,000	16,840,000	33,680,000	33,680,000	33,680,000	33,680,000	33,680,000	33,680,000	101,040,000
	104동 (4)	2~4층	3	94,436,000	231,664,000	326,100,000	16,305,000	16,305,000	32,610,000	32,610,000	32,610,000	32,610,000	32,610,000	32,610,000	97,830,000
		5~20층	16	94,436,000	242,364,000	336,800,000	16,840,000	16,840,000	33,680,000	33,680,000	33,680,000	33,680,000	33,680,000	33,680,000	101,040,000
74B	101동 (2)	2~4층	3	94,318,000	234,782,000	329,100,000	16,455,000	16,455,000	32,910,000	32,910,000	32,910,000	32,910,000	32,910,000	32,910,000	98,730,000
		5~21층	17	94,318,000	245,482,000	339,800,000	16,990,000	16,990,000	33,980,000	33,980,000	33,980,000	33,980,000	33,980,000	33,980,000	101,940,000
74C	101동 (1)	2~4층	3	94,421,000	236,079,000	330,500,000	16,525,000	16,525,000	33,050,000	33,050,000	33,050,000	33,050,000	33,050,000	33,050,000	99,150,000
		5~21층	17	94,421,000	246,879,000	341,300,000	17,065,000	17,065,000	34,130,000	34,130,000	34,130,000	34,130,000	34,130,000	34,130,000	102,390,000

	104동 (5)	2~4층	3	94,421,000	236,079,000	330,500,000	16,525,000	16,525,000	33,050,000	33,050,000	33,050,000	33,050,000	33,050,000	33,050,000	99,150,000
		5~20층	16	94,421,000	246,879,000	341,300,000	17,065,000	17,065,000	34,130,000	34,130,000	34,130,000	34,130,000	34,130,000	34,130,000	102,390,000
84A	102동 (1,3,4)	2~4층	9	106,864,000	261,436,000	368,300,000	18,415,000	18,415,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110,490,000
		5~21층	50	106,864,000	273,436,000	380,300,000	19,015,000	19,015,000	38,030,000	38,030,000	38,030,000	38,030,000	38,030,000	38,030,000	114,090,000
	103동 (1,2,3)	2~4층	9	106,864,000	261,436,000	368,300,000	18,415,000	18,415,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110,490,000
		5~21층	51	106,864,000	273,436,000	380,300,000	19,015,000	19,015,000	38,030,000	38,030,000	38,030,000	38,030,000	38,030,000	38,030,000	114,090,000
	104동 (1,3)	2~4층	6	106,864,000	261,436,000	368,300,000	18,415,000	18,415,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110,490,000
		5~19층	30	106,864,000	273,436,000	380,300,000	19,015,000	19,015,000	38,030,000	38,030,000	38,030,000	38,030,000	38,030,000	38,030,000	114,090,000
	105동 (2,3,4)	2~4층	9	106,864,000	261,436,000	368,300,000	18,415,000	18,415,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110,490,000
		5~19층	45	106,864,000	273,436,000	380,300,000	19,015,000	19,015,000	38,030,000	38,030,000	38,030,000	38,030,000	38,030,000	38,030,000	114,090,000
84B	102동 (2)	2~4층	3	106,997,000	264,403,000	371,400,000	18,570,000	18,570,000	37,140,000	37,140,000	37,140,000	37,140,000	37,140,000	37,140,000	111,420,000
		5~20층	16	106,997,000	276,503,000	383,500,000	19,175,000	19,175,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115,050,000
	104동 (2)	2~4층	3	106,997,000	264,403,000	371,400,000	18,570,000	18,570,000	37,140,000	37,140,000	37,140,000	37,140,000	37,140,000	37,140,000	111,420,000
		5~19층	15	106,997,000	276,503,000	383,500,000	19,175,000	19,175,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115,050,000
84C	103동 (4)	2~4층	3	107,004,000	265,096,000	372,100,000	18,605,000	18,605,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111,630,000
		5~21층	17	107,004,000	277,296,000	384,300,000	19,215,000	19,215,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115,290,000
	105동 (1)	2~4층	3	107,004,000	265,096,000	372,100,000	18,605,000	18,605,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111,630,000
		5~19층	15	107,004,000	277,296,000	384,300,000	19,215,000	19,215,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115,290,0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74.9939A	74.9004B	74.9819C	84.8635A	84.9692B	84.9743C
약식표기	74A	74B	74C	84A	84B	84C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아파트 각 세대별, 근린상가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에도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공유대지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동별사용승인포함)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중도금이자후불제 조건 분양이며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시행사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74A	74B	74C	84A	84B	84C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	1	2	-	-	3
	장기복무제대군인		4		3	6	3	3	1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	-	3	3	6	16
	장애인		-	1	1	2	-	-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50%)		4	2	3	8	3	3	2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50%)		3	1	2	7	3	3	19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13	5	7	28	6	6	65
		일반공급(25%)	4	1	2	9	1	2	1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	2	5	3	2	13
합 계			33	10	21	70	22	25	18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요건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양평군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청자 선정방법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 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평군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의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경쟁이 있을시 양평군 거주자가 우선함),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신청 주택형의 예치금 및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천광역시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함. - 경기도 거주자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신청 미달이 발생되는 잔여물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 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경기도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 적용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평군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신청 주택형의 예치금 및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전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완료에 한함)하고 입주자모집공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양평군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 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양평군 거주자)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평군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1) 해당 주택건설지역(양평군) 거주자가 우선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공고) 시 유의사항

- 입주자 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하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관련된 전화문의는 일체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자(정보취약 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접수를 받으며,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입주자선정과 함께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합니다.
- 특별공급의 경우 소형·저가주택 소유 시 유주택자입니다.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모집공고일 2020.02.20.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기준소득, 75%)	경우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6,665,980원	6,226,343원 ~7,471,610원	6,938,355원 ~8,326,025원	7,594,084원 ~9,112,900원	8,249,813원 ~9,899,774원	8,905,542원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7,221,487원	7,471,611원 ~8,094,245원	8,326,026원 ~9,019,860원	9,112,901원 ~9,872,308원	9,899,775원 ~10,724,756원	10,686,650원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 ~ 130% 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직장 가입자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지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지역 가입자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해당) ② 건강보험증(지역가입자 확인용)사본	① 견본주택에 비치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인 날인된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72호(2018.5.8.) 제12조] 참조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72호(2018.5.8)]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청약홈(www.applyhome.co.kr))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 내역에 대하여 검증절차 없이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주택 전산망, 주민등록 전산망 및 한국감정원 당첨자 명단관리 전산망에 의한 검색결과 청약자격 착오 입력 등에 따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및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청약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 하시고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시 청약자격 및 입주자선정기준 등은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청약제도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착오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동·호수를 배정)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 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 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사본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 및 예비입주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사실은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당첨조회"개별조회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평군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5조 제3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양평군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한국감정원 청약 홈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제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기존 소유 주택에 대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소유권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여야 하며, 우선공급 받은 후 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음. 이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 사실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처분 완료하여야 함.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공급 받은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1항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된 예비입주자 수가 예비입주자 총수에 미달되거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이용하여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입주자저축 순위 별 자격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거주구분	순위	면적	신청자격
민영주택	양평군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1순위	전 주택형	•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0.07.17)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12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1순위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2순위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가입한 자)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차액 충족 기준 : 청약신청전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가능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양평군,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2호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확인할 서류 등</th></tr>
<tr><td rowspan="10">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10">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9년 미만</td><td>18</td><td rowspan="1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전산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14년 미만</td><td>28</td></tr>
<tr><td>5년 이상~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15년 미만</td><td>30</td></tr>
<tr><td>6년 이상~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td>7년 이상~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td rowspan="4">②부양가족 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d rowspan="4">-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 시 부양가족수 산정)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만 18세이상 ~ 만 30세 미만: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이상: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td></tr>
<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td>2명</td><td>15</td><td>6명이상</td><td>35</td></tr>
<tr><td>3명</td><td>20</td><td></td><td></td></tr>
<tr><td rowspan="10">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10">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9년 미만</td><td>10</td><td rowspan="10">-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td></tr>
<tr><td>6개월 이상~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10년 미만</td><td>11</td></tr>
<tr><td>1년 이상~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11년 미만</td><td>12</td></tr>
<tr><td>2년 이상~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12년 미만</td><td>13</td></tr>
<tr><td>3년 이상~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13년 미만</td><td>14</td></tr>
<tr><td>4년 이상~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14년 미만</td><td>15</td></tr>
<tr><td>5년 이상~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15년 미만</td><td>16</td></tr>
<tr><td>6년 이상~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td>7년 이상~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r><td>총 점</td><td>84</td><td colspan="5"></td></tr>
<tr><td>비 고</td><td colspan="6">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td></tr>
<tr><td colspan="7">※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td></tr>
</table>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외 세대원이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소유시 부양가족수 미포함하여 산정함.(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 수 제외)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증여,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③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④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특별공급 주택소유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소형·저가주택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배우자 포함)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은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②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③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2020.04.17.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법에 따릅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참고 :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100%, 청약과열지역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75%,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 비율 100%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참고 :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50%, 청약과열지역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30%,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 비율 0~50%까지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평군 거주신청자가 수도권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청약홈(www.applyhome.co.kr))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 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 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사본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 및 예비입주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사실은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당첨조회"개별조회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Ⅳ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특별공급 신청일정 및 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7.27.(월) (청약홈 홈페이지: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고령자.장애인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해 견본주택에서 가능함.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홈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전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검증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일정 및 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0.07.28.(화) 08:00~17:30	인터넷 청약신청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0.07.29.(수) 08:00~17:30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NH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서 효력 상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주민등록증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최하층 주택우선배정 신청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금회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1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함.

구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②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경쟁 시 ①,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별도양식)를 제출해야 함.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 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자격입증 서류 및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별도 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검증 구비서류 (현장 접수시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시는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기간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 통 서 류 (일반공급 포함)		O	무주택 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유 및 변동일,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하단의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복무확인서	본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시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하단의 초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전체 포함"발급바람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존속과 해외 체류중인 내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7.1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하단의 초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전체 포함"으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랍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용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인 내국인 직계존속과 해외 체류중인 내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공문으로 갈음
다자녀 특별공급	O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상기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에 따라 "상세"발급바람)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모집공고일 이후 3년 이상의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사격 증명원 등)		
		O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서명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의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2005. 07. 01.「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특별)공급 청약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당점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유의사항

■ 당첨자발표 일정

구 분	일시	당첨자발표 및 확인방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0.08.04.(화)	-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당첨일로부터 10일간)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에서 일반 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 검수는 당첨자 계약체결시 부적격 서류 검수 및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리세대 당첨자의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일정에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 잔여 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8.04.(화)~2020.08.13.(목)
인터넷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8.0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화(ARS)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	• 일 시 : 2020.08.05.(수) ~ 2020.08.12(수) 10:00 ~ 16:00 • 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제출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 19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전 자격확인 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정당당첨자인 경우에도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분리세대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상기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Ⅵ 계약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2020.08.17.(월)~2020.08.19.(수) 3일간 (10:00 ~ 16:00)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 19)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 계약 당일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단, 57조제7항에 위배되면 당첨자로 인정되지 않음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세대"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여,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당첨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약 당첨자 명단에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승인(변경 포함)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당첨자 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는 분은 구비서류와 같이 소명자료 제출)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계약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필수 해당자
		필수	해당자		
본인계약시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입금증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제출, 본인외 모두)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계약자 본인 발급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인장	○		대리인	서명가능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 기관	계좌 번호	예 금 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393301-04-077118	코리아신탁(주)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ex) 101동 102호 → '1010102' / 101동 2001호 → '1012001'
- 지정납부일 이전에 선납하는 잔금에 대해서는 연2%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계약자는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관련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 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나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해주며, 계약자는 입주시 납부된 이자를 시행위탁자에게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자후불제).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비용(보증수수료, 인지대 등)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됩니다.)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융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선납할인 및 연체 안내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남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월 : 2023년 3월 예정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차장,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어린이놀이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Ⅶ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신청 형별	확장 부분	세대당 확장금액	납부일정		
			계약금(계약체결시)	중도금(2022.01.11.)	잔금(입주지정기간)
74A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함	11,400,000	1,000,000	5,000,000	5,400,000
74B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함	11,000,000	1,000,000	5,000,000	5,000,000
74C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함	12,100,000	1,000,000	5,000,000	6,100,000
84A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함	12,900,000	1,000,000	5,000,000	6,900,000
84B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함	12,400,000	1,000,000	5,000,000	6,400,000
84C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함	13,700,000	1,000,000	5,000,000	7,700,000

- 발코니확장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금융 기관	계좌 번호	예 금 주
발코니확장공사비 납부계좌	국민은행	393301-04-077121	코리아신탁(주)

※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작성한 발코니확장계약서에 준하고,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301호를 계약 → 1010301)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 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 발코니확장 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분양주택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함.(잔금은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은 부분적인 확장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 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품질(타사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는 확장 시 제공품목 등 구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 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정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일부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소유권이전등기 후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위치, 조명기구 위치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시행위탁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시 대피공간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해당부위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상부세대가 확장일 경우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마감,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공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 시행위탁자와 무관합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주 택 형	에어컨 설치위치		금 액(기본형)	납부일정	비 고
74A, 74B, 74C	선택1	거실 + 침실1	2,800,000	시공업체 및 납부일정, 납부계좌는 "별도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조사 : 삼성전자 (동급이상 사양제품의 제조사로 변경될 수 있음) • 모델명, 계약일정 및 납부기준은 계약서 참조 • 상기 금액은 IOT 미적용 금액으로, IOT 적용시 세대당 100,000원 추가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5,700,000		
84A	선택1	거실 + 침실1	3,00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6,200,000		
84B, 84C	선택1	거실 + 침실1	3,00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4,900,000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단, 추가선택 품목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옵션으로 계약할 경우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 및 거실과 침실1에 에어컨 콘센트가 시공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는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하며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확장금액과는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스템 에어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에 따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 및 전원선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으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선택1, 선택2)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분양가격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제품은 관계사의 도산, 품절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등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빌트인 가구/가전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주 택 형	모 델 명	금 액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 10% (계약체결시)	중도금 40% (2022.01.11.)	잔금 50% (입주지정기간)	
TBI냉장고	전 주택형	BRS665040SR	5,500,000	550,000	2,200,000	2,750,000	
전기쿡탑	전 주택형	NZ63R5301CK	1,000,000	100,000	400,000	500,000	

- 상기 TBI냉장고와 전기쿡탑의 브랜드는 삼성전자로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스타일 옵션(현관중문/붙박이장 및 슬라이딩 도어)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주 택 형	금 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 10% (계약체결시)	중도금 40% (2022.01.11.)	잔금 50% (입주지정기간)	
현관중문	74A, 74B, 74C	1,100,000	110,000	440,000	550,000	
	84A, 84B, 84C	1,600,000	160,000	640,000	800,000	
주방엔지니어 스톤	74A	3,500,000	350,000	1,400,000	1,750,000	
	74B, 74C	3,000,000	300,000	1,200,000	1,500,000	
	84A	4,000,000	400,000	1,600,000	2,000,000	
	84B, 84C	3,600,000	360,000	1,440,000	1,800,000	
침실1 슬라이딩도어	74A, 84A	1,200,000	120,000	480,000	600,000	
	74B, 74C	1,350,000	135,000	540,000	675,000	
알파룸 슬라이딩도어	84A	2,200,000	220,000	880,000	1,100,000	
거실/주방 바닥 타일	74A, 74B, 74C	1,500,000	150,000	600,000	750,000	
	84A	2,000,000	200,000	800,000	1,000,000	
	84B, 84C	1,700,000	170,000	680,000	850,000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212-6501-31	일신건영(주)

-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준하고,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301호를 계약→ 1010301)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 및 발코니확장공사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해당 동, 호수를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은 발코니확장공사 계약 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의 계약일정은 추후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를 확인 요망)
- 상기 추가 선택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 및 취소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은 마이너스 옵션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본 아파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재발주 및 시공 상의 문제로 계약 후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에 따라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에 따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선택시 유상옵션이며, 발코니 비확장세대는 선택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공동주택(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Ⅷ 유의사항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 일반공통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세대별 단지 및 지구내 표현되지 않은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사용한 각종 홍보용 자료 및 CG, 일러스트 등은 예비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계약자용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단위세대 및 외관, 사업구역 내 각종 시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 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모형 및 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 · 호수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관할관청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준공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 정책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하천, 자전거 도로, 경관녹지, 완충녹지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 표현된 주변도로 및 하천, 경관녹지, 완충녹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 · 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 · 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휘트니스센터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단지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곽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 자문 및 시공 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영구배수, 제습기 등)로 인한 제반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단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 ·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분양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전용률, 층별, 향별, 소음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로 공급 금액이 상이하므로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할관청,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 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계약자는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상가)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동 · 호수 당첨시 동일한 주택형 및 평면이나 견본 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보행자도로, 동 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분진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으로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할 수 없습니다.

■ 홍보물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주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카탈로그 이미지컷, 견본주택 내 단위세대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측벽 및 옥탑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
-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높이는 2.7m이상이며, 차로의 높이는 2.7m입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시, 차량의 높이는 2.7m로 제한되며, 2.7m를 초과하는 탑차(택배운송 등)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서비스 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서비스 면적 증감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당 아파트 배치구조, 동 · 호수별 위치,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 · 조망 · 소음 ·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형태로 인한 요철, 입면 마감재 및 장식물, 외부승강기 및 계단실, 지하층 환기용 급배기구,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급배기구(실외기실 포함) 등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관련한 건축법 제 규정을 만족함에도, 저층 세대 및 일부 세대는 향, 배치에 따라 일조가 충분하지 않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주변도로와 인접한 세대는 도로소음 및 야간에 가로등, 차량 등으로 인해 취침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냄새,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일부동에 설치된 필로티는 공공통로로서 그 인접 상부 세대는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 사인물 ·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본 공사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 최종확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에 따라 층수 산정 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상이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은 타입별로 합산하여 전용면적에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 기타공용면적(부대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전체 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시설은 대관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 시 각 동별로 계단실, E/V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와 동선의 편차가 있으므로 시설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놀이쉼터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경관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비상차로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고 공간의 명칭 및 외부시설물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은 위치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사용 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 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계획 및 도로 관련 시설물 등은 별도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시공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물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동일지역(양평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조경과 당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동별로 형태가 상이하여 주동 ELEV, 계단실 위치가 다를 수 있고, 주동형태별로 ELEV홀 창호의 크기, 위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에는 추가적으로 오 · 우수 배관을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관련 단지외관 향상을 위하여 주동부의 옥상장식물과 외부 색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부마감, 옥상장식물은 사업시행자의 설계변경에 따라 최종 설계안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길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 당 아파트의 구조 및 마감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부지 대지면적은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확정측량 등 관련법령에 따른 각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예정이며, 추후 대지면적 증감에 따른 대지비 상호 정산은 없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설계변경 시 당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변경허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 · 허가의 변경, 건축변경허가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 · 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일부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공사착수 후 아파트의 현장여건(지질상태, 주변민원 등)에 따라 토목공사 및 지정 공법이 사업승인도서와 달리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인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 내·부외 여건 등

- 단지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및 교통시설물의 배치 등에 대하여는 인허가 과정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사유 등에 따라 공사계획변경(공사범위, 공사시기 등)이 있을 수 있음.
- 입주시 단지의 명칭, 동・호수는 인허가관청과 협의(또는 심의)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도로, 고속도로, 단지내 차로 및 비상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단지 주·부출입구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시행사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의 기반시설이 입주 시기에 맞추어 건설중이나 일부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입주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측벽 및 옥탑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관개선 등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등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각 세대 배치에 따른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등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세대는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지붕은 입주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해당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동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출입구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등의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의 형태, 내부구조, 가구 및 집기류는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각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용으로 실공사와는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령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계획승인 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여야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 적용 디자인 및 사양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주차장은 지하1층~지상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동별 주차장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적으로 동선 계획이 되어 있으나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배분 등 단지 내 주차장은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받은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 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 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 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주차장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전체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동별 주차대수, 출입동선 길이 등).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아파트 전, 후면에 위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세대는 조망 및 소음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공유시설물(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계획, 놀이터기구 등은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되는 대체구거 시설의 크기 및 깊이 모양, 설치위치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램프 출입구, 램프 지붕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출입구 도로,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차장, 공공용지는 공사완료 후 재산관리청에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 단위세대 관련 유의사항
- 본 공사시 콘센트, 스위치(일괄소등, 전등), 분전반, 통신단자함, 스프링클러, 온도조절기, 배수구 등의 위치가 견본주택과 달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되는 현관 바닥타일, 거실 아트월, 주방, 욕실 바닥 및 벽체 타일의 나누기도는 견본주택과 달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되는 거실 아트월의 경우 타일의 컬러 및 무늬(베인)가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가구(주방, 일반, 욕실 등) 후면(벽, 천장, 바닥면, 측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본 공사시 악세서리, 힌지 등의 가구철물은 제품 및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석의 경우, 본 공사시 분절 시공 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적용되는 시스템가구의 레이아웃, 컬러, 시공 디테일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되는 홈네트워크 시스템(거실 월패드), 주방 액정 TV의 세부기능은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되는 세대 등기구의 위치 및 배선기구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되는 세대 바닥 마루의 폭은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찍힘, 갈라짐 등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되는 세대 몰딩, 걸레받이의 재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되는 주방 상판, 욕실 젠다이, 욕실 세면대의 경우 자재의 특성상 이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 냉장고 사양 등에 따라 설치 및 수납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가전기기의 돌출 정도는 견본주택과 달리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적용되는 가전제품, 도기 및 수전류, 조명기구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달리 동등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되는 욕실 젠다이의 시공 디테일은 견본주택과 달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되는 실별 단차(욕실, 현관, 발코니 등)는 견본주택과 달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의 경우, 실내화 등이 문 하부에 걸려 개폐시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휀 및 점검구의 경우 설치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적용되는 창호, 유리 및 손잡이의 형태, 열림방향, 색상, 제조사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달리 동등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되는 실외기실 그릴의 사양, 설치높이, 개폐방식 등은 견본주택과 달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되는 보일러의 제조사, 모델, 설치위치는 견본주택과 달리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천정에 일부 연도가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되는 가스배관, 가스계량기, 손빨래 수전, 세탁기 수전, 선홈통, 바닥 배수구, 에어컨 냉매배관 등의 위치, 침실 커튼박스 규격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로 실외기실 사이즈가 상이하여 입주자의 개별 에어컨 사양에 따라 또는 천정형에어컨 옵션계약 변경으로 인한 실외기 추가에 따라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표현된 침실 사이즈의 경우 오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각 실의 내경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의 가구 설치시 반드시 현장 실측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관련 유의사항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체결 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동등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 계약품목, 선택옵션 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설치되어 있고 본 공사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별도 계약품목(설치사항 및 규격), 선택옵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추후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용량,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CG, 전시사인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현장상황과 상이 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각종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세탁기 등) 및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과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IX 기타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요건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크게 변경시 별도의 제한기간 없이 수시 변경 가능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작게 변경 불필요(지역별 · 주택규모별 예치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의 주택에 청약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 지역명 및 거주 개시일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관리형토지신탁(본 사항은 기타 다른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 본 공급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신탁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더파인피엠씨,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탁(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 물건에 대하여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탁(주)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분양 물건 계약 및 공급으로 인하여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탁(주)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더파인피엠씨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분양 물건과 관련된 공급계약상 내용 외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개별 계약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더파인피엠씨와 시행수탁자인 코리아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의 모든 권리, 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더파인피엠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시행수탁자(매도인)인 코리아신탁(주)의 매수인(분양계약자)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도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더파인피엠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됩니다.
• 본 분양 계약과 관련된 분양 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탁(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탁(주)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분양계약자)은 시행수탁자인 코리아신탁(주)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과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더파인피엠씨 및 시공사인 일신건영(주)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 교체(건축물 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시 매수인(분양계약자)은 사전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인인 코리아신탁(주)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코리아신탁(주)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코리아신탁(주)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써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더파인피엠씨)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더파인피엠씨 또는 매수인(분양계약자)은 분양계약 체결, 해지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 내(30일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 분	적용 여부
고기밀창호	외기 간접면한 현관문 기밀성능 2등급 적용
고효율기자재	펌프, 전동기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세대내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세대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구 분	적용 여부
고효율조명기구	공용부위 조명기구 최저소비효율기준 조명기기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단지내 공용화장실에 재실감지센서 설치
실별 온도 조절장치	각 세대내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세대내 설치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로 설치

■ 분양보증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내용

구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단위 : 원)	보증기간
공동주택(아파트)	제 01292020-101-0005700 호	₩107,484,160,000원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장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으로 향후 수분양자에게 대환할 수 있습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 및 정보통신감리
감리 회사명	(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해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티에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감리 금액	금 일십억오천사십구만삼천사백원(₩1,050,493,400)	금 사억삼백삼십오만이천일백사십원(₩403,352,140)	금 삼억일천삼백오십만원(₩313,5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겸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회사명	코리아신탁(주)	(주)더파인피엠씨	일신건영㈜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154-27, 103호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72(의정부동)
법인등록번호	110111 - 2937831	110111 - 5658111	110111 - 0655477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 19

※ 본 견본주택 주차장이 협소해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 031) 771-1773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